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 개 30312- 1176	(전화번호 731-6392)	전 결 규 정 4 조 1 항 부 시 장 재건사학
처리기간	시 장 001533		
시행일자	'85. 11.		
보존연한	영 구		
보 조 기 관	부 시 장 건설관리국장 주택개발과장	전 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심사)
기안책임자	개발사업과장 남궁학		
경 유 수 신 참 조	국 고시제 	발 신 	검 열 1985. 12. 26 통제관
제 목	옥성 제2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제 1 안) 내부 결재			
1. 건설부 고시 제470호 ('73. 12. 1)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274호 ('82. 7. 20)로 사업계획 결정된 옥성 2구역에 대하여 서고시 제232호 ('81. 6. 6)로 및 서고시 제252호 ('83. 5. 3)로로 관미처분 계획 인가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중 건설부 고시 제218호('85. 5. 7)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고시 (현종모지공원 일부 해제) 가 있어			
2. 도시재개발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권한위임)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재개발법 제5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4조의 3 (주민의견의 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생략과 도시재개발법 제56조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 변경 결정을 시도해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업계획 변경 결정 도서 1부.			



제안일자	1985. 12. 14	제 1416 호
담당자	별시제관	범무부장관
	김민	김민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구역} 호

특석 제 2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274호 ('82.7.20)로 사업계획 결정된 특석제2구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218호 ('85.5.1)로 도시계획 지선 변경 결정고시가 있어,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58조에 의거하여와 같이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동작구청 주택과에 두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5. 12.

서울특별시 장

가. 특석 제 2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 변경 결정 조서

- 구역명 : 특석 제 2 구역
- 면적 : 111,252 평방미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석동 산 83번지 일원
-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용도	면적 (M ²)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택지	50,045.20	58,469.90	증 8,424.70	
도로	17,206.80	19,467.10	증 2,280.30	
공원	479	479	0	
녹지	43,421.30	32,716.30	감 10,705.00	
공공용지	100	100	0	
계	111,252.30	111,252.30	0	

•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로선명	폭현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4류26호선	4	124	소로4류12호선	소로4류9호선	
"	" 4류27 "	4	66	"	" 4류26호선	
"	" 4류28 "	4	140	소로3류4호선	" 4류5호선	
변경	당초	소로4류5호선	4	32	소로4류7호선	지구계
	변경후	"	4	15	"	소로4류28호선
변경	당초	소로4류6호선	4	62	"	지구계
	변경후	"	4	41	"	소로4류28호선

나. 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별첨 (생략)

(제 3 안)

수신 홍부서장관 (공보관)

발신 시(국)장

제목 관(시)보 게재의의

1.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 옥석제2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모불임
 고시본 사본과 같이 변경 결정조서 하였고 관(시)보에 게재의의하오니 조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30312

다모불임 고시본 사본 2부

1981.12.12
 주시강

건설부 고시 제470호 ('73.12.1) 보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

관(시)보 게재의의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옥석제2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조서

1. 건설부 고시 제470호 ('73.12.1) 보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
 된 옥석제2구역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218호 ('65.5.1) 보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현용보지공원 일부 해제)이 있어

2. 다모불임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

다도불입 도서 과1부

(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옥석제2주 주택량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고시 (통보)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결정된 옥석제2구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218호 ('85.5.1)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현충묘지공원 일부 해제) 이 있어

2. 다도불입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할것. (하시기 바랍니다)

3. 동장구청장은 관계도서를 주택과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것이며,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사업추진에 반전을 기할것. 끝.

수신서 토모, 도시계획, 시설계획과장

동장구청장 (주택도시정비과장)

결재
1985.12.12

사업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

구역명 : 혹석제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1. 본 구역은 건설부고시 제470호 ('73. 12. 1)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232호 ('81. 6. 6) 및 서고시 제252호 ('83. 5. 3)로 권리처분 계획 인가에 의해 사업시행 중인 구역으로,
2. 건설부고시 제218호 ('85. 5. 1)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현충묘지공원 일부해제)이 있어,
3.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58조에 의해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혹석동 88번지 주민속원사업인, ^{무시장}
4. 기존 불량주택 밀집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복타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기능 회복과 현충묘 가시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회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임.

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구역명 : 옥석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구역
2.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석동 산 83번지 일대
3. 면적 : 111,252.30평방미터
4. 토지이용계획

양도	면적 (M ²)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주택지	50,045.20	58,469.90	증 8,424.70	
도로	17,206.80	19,487.10	증 2,280.30	
공터	479	479	0	
녹지	43,421.30	32,716.30	감 10,705	
공공용지	100	100	0	
계	111,252.30	111,252.30		

5. 도로 (가로망 결정 조서)

구분	토선명	폭원	연장	12.22 크기 시작	종점	비고
신설	소로4류26호선	4	124	소로4류12호선	소로4류9호선	
	" 4류27 "	4	66	"	" 4류26 "	
	" 4류28 "	4	140	소로3류4호선	" 4류5호선	
[토] [노]	당초 소로4류5호선	4	32	소로4류7호선	지구계	
	변경후 "	4	15	"	소로4류28호선	
[토] [노]	당초 소로4류6호선	4	62	"	지구계	
	변경후 "	4	41	"	소로4류28호선	